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집·내점포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1. 12. 20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11월 14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11월 16일

라. 상정일자 :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(2011년 12월 12일)
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 : 복지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환경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 및 실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.
- 청결유지에 따른 적용대상 및 책임자 규정(안 제3조, 안 제4조).
- 청결유지 의무자의 청결범위 지정 및 국민의 활동사항 등을 규정(안 제5조, 안 제6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박종성)

가. 본 조례안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7조에 따라 내 집·내 점포 앞 청결 유지에 대한 실천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나. 주요내용을 보면

- 내 집·내 점포 앞 청결유지의 의무는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음을 명시함(안 제4조).
- 청결유지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청결유지의 범위를 정함(안 제 5조).
- 구민은 청결유지를 위해 구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스스로 생활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규정함(안 제6조).

다.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폐기물관리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청결유지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스스로 내 집·내 점포 앞 주변 청결을 유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의식을 유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·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92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1.11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7조 규정에 따라 내 집·내 점포 주변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법 배출 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및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청결유지의 책임

- 내 집·내 점포 주변 청결유지의 의무는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음

나. 청결유지의 범위

- 보도는 해당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으로 함
-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해당 건물의 주변도로로 함

다. 청결유지 노력

- 구민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구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함
-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·내 점포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데 노력하여야 함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대한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근거

1)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

2) 구청장 지시사항 제61호(2011. 4. 11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입법예고(2011. 9.28~2011.10.19(20일간))결과 : 의견 없음

라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붙임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·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·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내 집·내 점포 주변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법 배출 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및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보도”란 연석선(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)·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(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)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.
2. “이면도로”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(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·일반국도·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)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.
3. “보행자전용도로”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.
4. “청결유지”란 보도·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상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은 물론 사회통념상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청소작업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관내 지상시설물·건축물 등에서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등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.

제4조(청결유지 책임) 내 집·내 점포 주변 청결유지 의무는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다.

제5조(청결유지 범위) 청결유지 의무자의 청결유지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보도는 해당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으로 한다.
2.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해당 건물의 주변도로로 한다.

- 제6조(청결유지 노력)** ① 구민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,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청결유지 활동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·내 점포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대한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의 경우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」 제5조를 준용할 수 있다.

제7조(규정 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